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9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김영호·한민수·복기왕

강선우 • 문대림 • 김준혁

김영배 · 박희승 · 이해식

강경숙 • 이병진 • 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 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 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

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계) ①・② (생 략)	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	③
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	
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	
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	
사업의 관계 서류를 <u>5년간</u> 보	<u>10년간</u>
관하여야 <u>한다</u> .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u>따라야 한다</u> .